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- 463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9월 9일
국토교통부장관

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

1. 기본 사항

- 인정번호: 제16호
- 상품명: 접이식 실내 피난계단
- 대체시설 형식: 탈출형 대체시설
- 인정업체 및 대표자: (주)파인디앤씨(대표자: 홍성천, 김종찬)
- 공장소재지: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연암산로 169
- 유효기간: 2024년 9월 9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

2. 기타 사항

본 제품의 대피시설 인정서 및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